



등록번호

20080100374

최초등록일

2008.08.26

최종등록일

2024.11.04.

홈페이지

www.ghostcastle.net

대표이메일

ghostcastle@ncomplus.net

고스트캐슬 정보공개서

(주)엔컴플러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엔컴플러스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64, 3층 아이코닉스 빌딩

대표번호 : 1688-9253

팩스번호 : 02-467-2558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4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7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8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4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27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29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0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32

* [별첨.1] :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별첨.2] : 가맹금 예치신청서

* [별첨.3] : 가맹점관리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엔컴플러스	고스트캐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64 아이코닉스 3층			
	법인 설립일자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3.01.15	2003.01.17	최진식,최진욱	1688-9253	02-467-2558
	법인등록번호	110111-2695067	사업자등록번호	206-81-7746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최진식	고스트캐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64 아이코닉스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진식,최진욱	1688-9253	02-467-2558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최진욱	고스트캐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64 아이코닉스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진식,최진욱	1688-92535	02-467-2558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감사)	조병관	고스트캐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64 아이코닉스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진식,최진욱	1688-9253	02-467-2558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플레이스원	타요키즈카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64, 3층(삼평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진식	02-462-3502	02-467-2558
	법인등록번호	110111-5120938	사업자등록번호	206-86-77246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뽀로로파크	뽀로로파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64 아이코닉스 3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종일	031-698-2000	031-698-2400
	법인등록번호	110111-4211241	사업자등록번호	214-88-4963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고스트캐슬]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고스트캐슬	자체복구솔루션명칭과 인테리어 컨셉의 혼합어
상 호	고스트캐슬(돈까스)PC방 OO점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등록 제0101800호
그 밖의 영업표지		등록번호 : 등록 제41-0203745호
		등록번호 : 41-0266635-0000호
		등록번호 : 41-02 66636-0000호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4,615,008	2,149,064	2,465,944	2,312,558	-70,414	41,864
2022년	5,176,668	2,498,047	2,678,621	1,765,408	-138,891	212,565
2023년	4,063,177	1,292,003	2,771,174	340,402	143,531	92,361

그 근거 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 [별첨 1] :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당사는 2019년부터 직가매점의 운영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상기 매출은 인터넷 사업 매출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최진식	대표이사	2005.01~2007.04	(주)엔컴플러스 이사	회사 업무 총괄
			2007.04~현재	(주)엔컴플러스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2013.05~현재	(주)플레이스원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2015.01~현재	(주)뽀로로파크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최진욱	대표이사	2005.01~2007.04	(주)엔컴플러스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2007.04~현재	(주)엔컴플러스 이사	회사 업무 총괄
			2013.05~현재	(주)플레이스원 감사	감사
	조병관	감사	2005.01~현재	(주)엔컴플러스 감사	감사
2005.01~현재			은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1	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엔컴플러스	가맹사업 경영	2003년~현재	고스트캐슬(등록번호: 20080100374)이라는 영업표지의 PC방사업 경영
계열회사	(주)플레이스윈	가맹사업 경영	2013.05~현재	타요키즈카페(등록번호: 20130112)라는 영업표지의 키즈카페사업 경영
계열회사	(주)뽀로로파크	가맹사업 경영	2015.01~현재	뽀로로파크(등록번호: 20150236)라는 영업표지의 키즈카페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고스트캐슬		2003.01.23. 출원 2004.06.09. 등록	출원 제2003-0001492호 등록 제 0101800 호	(주)엔컴플러스	2024.06.09 (갱신가능)
고스트캐슬 돈까스PC방		2009.08.14. 출원 2010.11.23. 등록	출원 제2009-0018562호 등록 제41-0203745호	(주)엔컴플러스	2030.11.23 (갱신가능)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고스트캐슬 가맹사업 현황

1. “고스트캐슬”을 시작한 날: 2003년 3월 15일

2. “고스트캐슬”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엔컴플러스	고스트캐슬	최진욱	2003.3.~2007.4.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2동 685-218
(주)엔컴플러스	고스트캐슬	최진식	2007.4.~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64 아이코닉스 3층

3. “고스트캐슬” 업종

영업표지	업종	
고스트캐슬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PC방	PC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고스트캐슬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고스트캐슬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6. 고스트캐슬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단위 :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계열회사	(주)플레이스원	타요키즈카페	20130112	키즈카페	20/8	18/7	18/7
계열회사	(주)뽀로로파크	뽀로로파크	20150236	키즈카페	2/9	2/7	2/8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전 사업연도 가맹점 없음.

8.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고스트캐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해당없음	-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	-		-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	-	-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고스트캐슬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8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부가세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	
광고			-	-	-	
판촉	해당사항 없음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특검역점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2동 656-75	02-468-5691

자세한 예치방법은 이 정보공개서의 VI-1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귀하는 IV-1 항목에 기재된 가맹금을 첨부한 예치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 [별첨 2]: 가맹금 예치신청서

가맹점사업자는 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 예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가맹본부 관리번호 : 2068177464000-01

가맹점사업자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대신 국민은행의 예치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고스트캐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PC 50대 기준 97,800~122,000천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300				
Know-how 제공	440	계약 체결일익일	점포개설일 이전	해당 항목의 제공 및 준비 완료	
개업교육	660	계약 체결일익일	교육시작 이전		
개업지원	660	계약 체결일익일	점포개설일 이전		
운영매뉴얼 등 각종자료 제공	440	계약 체결일익일	자료제공 이전		
점포개발 의뢰비	1,100	점포개발 의뢰 계약 체결과 동시	반환 안됨	점포개발 시 비용 소요	

* 가맹금은 당사의 경영방침 및 경영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이행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1,000			
계약이행보증금	1,000	계약 체결일익일	상품대금 등의 미지급금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4,300천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합계	4,300
Know-how 제공	440
개업교육	660
개업지원	660
운영매뉴얼 등 각종자료 제공	440
점포개발 의뢰비	1,100
계약이행보증금	1,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IV-1-7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장면적 132㎡ 기준입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조건	비고
총계		93,500~117,700	2,337~2942				
필수설비(PC)	(주)엔컴플 리스	41,800~49,500	1,045~1,237	별도 계약서에 명기된 기한	별도 계약서에 명기	별도 계약서에 명기	본체, 모니터 등 50대 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주)엔컴플 리스	35,200~44,000	880~1,100				132㎡ 기준
최초 공급 상품	(주)엔컴플 리스	5,500~6,600	137~165				게임S/W, 및 운영S/W 필수 품목·부수품 등의 상품 판매의 재료 (V-2 항목 참조)
필수설비(가구)	(주)엔컴플 리스	11,000	275				책상, 의자 등 50대 기준
주방 용품	(주)엔컴플 리스	0~6,600	0~165				돈가스 판매를 위한 주방 용품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점포 내에 설치되는 설비일체(인테리어, 집기비품, 간판 등)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직접 시공하게 하거나, 가맹본부가 공식지정 한 업체에 의뢰하여 설계, 시공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득한 후 자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시공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시공전체를 감리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도면제공, 감리비용 등으로 1.0㎡당(본 계약에 명시한 가맹점 면적 기준) 일금 칠만칠천원(₩77,000)(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분석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 검토 후 결정

* 당사는 입점할 점포를 개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가맹점사업자가 상권분석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시합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점포개발 의뢰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며,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금일백일 십만원(₩1,100,000)정(부가세 포함)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입점할 점포를 직접 개발한 경우에도 입점할 점포에 대한 상권분석 자료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물의 하자 및 결함 등의 검토를 포함하여 입지선정의 최종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 또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한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고스트캐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 합니다.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8)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가맹계약 체결일 익일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8 항목에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주)엔컴플러스	5.5/PC 1대	매월 15일			계약해지 시 계약이행 보증금에서 차감
광고 분담금		해당사항없음				
교육훈련비	(주)엔컴플러스	교육 전 사전 통지	교육시작일 3일전			교육 필요시 지급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점사업자분담				VII-1 참조
지연이자	(주)엔컴플러스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 까지			금전지급채무 발생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당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원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필요하다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의 : 경영지원팀 (02-462-3502)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할 때는 소정의 교육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고스트캐슬 운영권을 본 계약기간 중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인은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고 양수인은 교육 및 지원비 2,200천원(부가세 포함)과 계약이행보증금 1,000천원을 (주)엔컴플러스에게 입금하여야 합니다. 단, 양수인이 (주)엔컴플러스와 신규로 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금 3,300천원(부가세 포함)과 계약이행보증금 1,000천원을 (주)엔컴플러스에게 입금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맹점사업자는 점포 또는 영업을 처분하고자 하는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동의를 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위 항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단, 가맹본부가 위 1개월 이내에 확답을 발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처분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 적법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또는 영업을 양수하거나 전차한 제3자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영업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3) 경업금지 기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경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경업금지 업종은 PC방에 한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가)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고스트캐슬 시스템 및 Know-how 등 고스트캐슬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간판, 휘장, 로고 등 고스트캐슬에 관한 일체의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7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물건으로부터 위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나) 제1항에 규정된 철거 및 원상복구 및 철거의 비용은 본 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면적당(가맹계약서에 명시한 가맹점면적) 1,000원씩[매장면적(m²) X 지체일수 X 1,00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고스트캐슬 가맹점이라는 것을 공중에게 직·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모든 매뉴얼 및 양식, 보고서, 서신,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문서를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날로부터 7일 내에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고스트캐슬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필수품목 또는 부수품목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2)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고스트캐슬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하는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등에 대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고스트캐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

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는 고스트캐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고캐수제돈까스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가맹본부가 제공한 새로운 메뉴에 한하여 추가가 가능합니다.
고캐치킨까스			
고캐정식			
고캐함박&치킨까스			
만두컵밥(김치)			
만두컵밥(야채)			
만두컵밥(새우)			
만두컵밥(나시고랭)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상품·용역의 판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19세 이상이어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밤10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출입이 금지됩니다.(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 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PC 이용료/시간	1,000	변동 시 개별 통보	가맹본부는 새로운 메뉴 제공시 가격도 함께 제공 합니다.
고캐수제돈까스	4,000		
고캐치킨까스	3,500		
고캐정식	4,000		
고캐함박&치킨까스	3,000		
만두컵밥(김치)	3,000		
만두컵밥(야채)	3,000		
만두컵밥(새우)	3,000		
만두컵밥(나시고랭)	3,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PC방	고스트캐슬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장 가까운 가맹점포간 직선거리를 300m 이상으로 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고스트캐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고스트캐슬 가맹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어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 및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일반 소매점	CJ제일제당	F&B 관련 음식	완제품 판매
PC 외 3종	에고PC	PC외 PC관련 소모품	완제품 판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을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당사는 온/오프라인 동일 상품(티켓)을 판매중에 있으며, 각 채널들의 "전용상품"의 개념은 없음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고스트캐슬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5조 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5조 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5조 2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5조 2항
○ 고스트캐슬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5조 2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5조 2항

가맹본부가 위 사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첫째,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둘째,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이 된 경우

셋째,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27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금 및 로열티 등 금전 지급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조 1항
○ 교육 및 훈련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6조 1항
○ 운영매뉴얼 준수 및 감독·시정요구권의 각 항에 의거한 가맹본부의 시정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할 경우	6조 1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양도 등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6조 1항
○ 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의 지불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6조 1항
○ 지도지침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6조 1항
○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상품·자재 등의 대금지급을 연체한 경우	6조 1항
○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상표사용료 대금지급을 연체한 경우	6조 1항
○ 가맹본부의 경영지도나 지침을 2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6조 1항
○ 채무액이 가맹본부가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6조 1항
○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점포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6조 1항
○ 본 계약에 의해 약정된 광고나 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조 1항
○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보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6조 1항
○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6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조리미숙이나 고객서비스 불량으로 소비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가맹본부에게로 년 3회 이상 항의가 있는 경우	6조 1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6조 1항
○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6조 1항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공급·경영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6조 1항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로 처리된 경우	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乙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다. 乙이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법사실을 통보받고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정에 급박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6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6조 2항
○ 기타 천재지변 등 가맹사업의 유지 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6조 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 관련 계약 조문의 제6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 6조 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1개월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수인, 가맹본부의 신규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가맹본부와 양수인의 신규 가맹계약 체결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 성년후견인, 피 한정후견인에 해당 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 본부의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잔여기간 동안 계약 인정되며 소정의 교육비 부담해야 함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서면으로 승인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급박한 사정일 때 사후 승인 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는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상호 등을 도용하여 제3의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PC방	당사는 계약기간 중 경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고스트캐슬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일 24시간	매월 26일(2월은 24일) 이상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 금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제한하고 있지 않음	직접 근무(관리)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3회/분기	가맹본부	
친절도	담당자 매장 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3회/분기	가맹본부	
PC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PC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3회/분기	가맹본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3회/분기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는 상품·자재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 등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월 1회 이상 가맹계약의 종료시까지 보고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파견한 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며, 또한, 관리프로그램(피카 등) 또는 POS 접속을 항시 허용해야 합니다.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엔컴플러스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가맹점 관리표 별첨.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고스트캐슬 브랜드 이미지 제고, 매출액 증대,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본부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동안 가맹점사업자의 광고 및 판촉 비용에 대한 부담분은 없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판매증진을 위하여 “가맹점별 개별 판촉촉진 및 광고활동”을 할 경우, 그 횟수, 시기, 방법, 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시한 요건 및 수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의 일부를 가맹본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별 개별 판촉촉진 및 광고활동”을 위한 팜플렛,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기타 판촉물을 제작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대표전화와 팩스번호,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 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하되 그 위약금은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과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부가세별도) 단,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점포개설로부터 해지일까지의 매출액을 3개월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맹사업자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 × 3% × 잔여기간(월)

12.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진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7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70일 내외	96,800~122,100
문의상담	전화상담, 면접상담	즉시	비용없음
개설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서 사전제공, 개설상담(예산검토, 사업규모선택 등), 점포상담(점포개발 의뢰 계약 체결 및 비용 예치), 인근10개가맹점현황문서제공	D-70(1일)	1,100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손익계산, 점포계약 및 견적	D-63~69	비용없음

점포계약	확정		
상권/입지분석	허가가능검토, 건물하자점검, 상권분석, 입지분석, 경쟁업체분석	D-56~62	비용없음
가맹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작성, 점포계약 및 PC 및 인테리어 사양 선택, 도면설계, 개설비용 확정	D-53~55	2,200~3,300
인테리어시공	인테리어 공사 시작	D-28~52	35,200~44,000
상권 재조사	마케팅전략수립	D-25~27	비용없음
신고서류접수	소방시설 인허가, 영업신고관련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공사기간 중	비용없음
인력수급	아르바이트 및 매니저 수급	공사기간 중	비용없음
오픈전 교육	시스템교육, 운영교육, 슝인슝 운영교육	공사기간 중	비용없음
오픈전마케팅	현수막개시, 주변홍보 등	공사기간 중	비용없음
집기입고/ 네트워크연결	의탁자 및 냉난방기 입고, 전용선 가설, LAN가설, 네트워크장비 설치, 주방용품	D-18~24	11,000~17,600
PC설치	PC및 주변기기설치, 프로그램셋팅, 자동복구장비설치, 원격관리시스템구축	D-11~17	47,300~56,100
영업신고완료	영업신고, 소방필증, 제반허가상항, PC방등록증 발급	D-8~10	비용없음
시범운영	PC 및 매장운영, 시스템점검, 교육	D-1~7	비용없음
매장오픈준비	리허설, 오픈이벤트, 매니저과견, 회원관리업무 지원		
오픈	오픈식	D-day	자체비용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증 발급, 용도변경 또는 표시변경 진행시 관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기한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의 관할법원은 양당사자의 주소

지 관할 법원 또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안장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통알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바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자양압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3차 : 2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 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 경영지원팀 (02-462-3502)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고스트캐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업교육 (개업전)	회사 소개 관리프로그램 사용, 음식가공, 입금 방법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개업일 이전	필수 교육
개업지원 (개업후)	매장 운영 관리,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개업 후 10일 이내	필수 교육
정기교육	PC 관리, 신메뉴 가공 관련법 및 종업원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가맹본부 지정	필수 교육
특별교육	추가 교육, 보수교육	실습 및 강의	가맹본부 지정	가맹본부의 필요여부에 따라 결정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고스트캐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시간 및 장소, 내용, 비용 등은 가맹본부가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비용	교육시간	비고
개업교육 (개업전)	회사 소개 관리프로그램 사용, 음식가공, 입금 방법 등	가맹금 포함	개업일 이전 2일	필수 교육
개업지원 (개업후)	매장 운영 관리, 종업원 관리 실무 등	가맹금 포함	개업 후 5일	필수 교육
정기교육	PC 관리, 신메뉴 가공 관련법 및 종업원관리 실무 등	10만원/1회	가맹본부 지정 1일	필수 교육
특별교육	추가 교육, 보수교육	10만원/1회	가맹본부 지정	가맹본부의 필요여부에 따라 결정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사업자가 개업교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개설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가맹계약서상의 명시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462-3502)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 1] :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별첨 1]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가맹금 예치신청서

가맹금 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p>「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p>		

[별첨 3] 가맹점 관리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